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 확정·고시

- 전국 9개 권역에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40개소 지정

해양수산부(장관 전제수, 이하 해수부)는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제2차(2020~2029)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이하 수정계획)을 7월 25일(금) 확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야외 레저활동에 대한 관심 증가와 소규모·개별 관광에 대한 선호 증가로 세계 마리나선박 시장은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국민의 해양레저 수요 증가에 따라 2034년에는 마리나선박(등록 기준)이 43,060척*(2023년 대비 62.2% 증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맞춰 마리나항만시설**을 확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 (2023) 26,546척 → (2029) 33,800척 → (2034) 43,060척

** 총 72개소, 4,341개 선석(2023년 말 기준)으로 전체 마리나선박 수 대비 16.3%

이에, 해수부는 변화하는 해양레저 트렌드와 국민의 해양레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에 수립된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의 수정계획을 마련하였다. 수정계획은 ▲국내 해양관광활동 트렌드 변화, ▲레저보트 등록 대수 및 마리나항만 개발수요 추정, ▲마리나항만구역 및 예정구역 정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수정계획에서는 마리나항만법에 따른 마리나항만구역과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을 대폭 정비하였다.

마리나항만구역은 제2차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는 없었던 '국가지원 거점형 마리나항만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2개소*가 추가되어 기존 8개소에서 10개소로 늘어났다.

* 전남 여수 웅천마리나(2020.11. 고시), 경기 안산 방아머리 마리나(2022.3. 고시)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의 경우, 현장조사와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기존 70개소에서 40개소로 조정하였다. 이미 마리나항만 구역으로 지정되었거나 타 법령 또는 사업에 따라 개발이 완료된 지역 등은 예정구역으로서 의미가 사라진 지역으로, 정책혼선을 차단하기 위해 제외되었다.

* 마리나항만법에 근거하여 건설이 가능한 마리나항만 대상 후보지

전제수 해수부 장관은 “국민의 변화하는 해양레저 수요와 눈높이에 맞추어 이번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마리나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국가지원 거점형 마리나항만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민간투자 여건 개선, 마리나 산업 및 문화 육성 등 현장 이해관계자와 수요자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정책을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담당 부서	해양정책관	책임자	과 장	채정재 (044-200-5250)
	해양레저관광과	담당자	사무관	정제영 (044-200-5255)



참고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 요약

- ◆ 개발수요(해수면 기준) : 총 19,400척을 9개 권역에 배분(2029년)
- ◆ 기본계획 : 마리나항만구역 10개소,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40개소 선정, 예정구역 위치 등 제시

1 개발수요

- (선박수요) 전국 단위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수요는 2029년 33,800척, 2034년 43,060척으로 추정됨
 - * 전체 동력수상레저기구는 해수면과 내수면 모터보트, 동력요트를 포함
- (대상기간) 제2차 마리나항만기본계획 수립기간(2020~2029년) 및 향후 5년까지 추정(2034년)
- (추정인자) 시도별 인구, 조종면허 취득자, 해수면 요·보트 등록 척수, 대형 승용차 대수 자료 등의 추세를 인자로 도출
- (개발수요) 마리나항만 개발수요(해수면+내수면)는 2029년 33,800척, 2034년 43,060척, 2039년 53,110척으로 추정
 - 이 중 2029년 해수면 개발수요(19,400척)는 전국 차원의 추정 결과를 조종면허 취득자 비중, 해수면 요트와 모터보트 소유자 비중을 고려하여 9개 권역별에 배분

<권역별 해수면 마리나항만 개발수요 추정결과(2029년)>

구분	수도권	충청권	전북권	전남권	경남권	부울권	경북권	강원권	제주권
수요(척)	4,741	1,620	421	2,999	3,744	2,184	1,455	848	1,388
분담율	24.4%	8.4%	2.2%	15.5%	19.3%	11.3%	7.5%	4.4%	7.2%

2

기본계획 수정계획(안)

- (대상지 검토)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지정 동향, 지역별 마리나시설 개발 현황 분석을 통해 대상지 검토·선정
 - 지역별 마리나시설 개발 현황, 거점 마리나 개발사업 추진 동향 및 지자체 협의를 통하여 운영 중이거나 개발·계획 중인 마리나항만은 우선 대상지로 검토
- (기본계획) 마리나항만구역 및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포함
 - (항만구역) 마리나항만구역 10개소(8개소 → 10개소, 안산방아머리·여수웅천 마리나항만 추가)

<마리나항만구역(10개소)>

권역	개소	대상 항만(고시일)
수도권	경기	김포터미널(2011. 1. 3.), 제부(2022. 11. 8.), 안산방아머리(2022. 6. 22.)
	인천	왕산(2015. 7. 28.)
전남권	2	목포(2014. 6. 30.), 여수웅천(2022. 6. 13.)
경남권	2	총무(2014. 6. 30.), 진해명동(2023. 5. 23.)
경북권	1	후포(2015. 9. 30.)
제주권	1	중문(2015. 3. 26.)
합계	10	-

- (예정구역)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40개소
 - 마리나항만 예정구역(70개소) 중 일부 대상지역(30개소)이 타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이 추진·운영되고 있어, 마리나항만의 합리적인 개발과 이용을 위해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조정
 - * 조정(△30개소) : (제2차 마리나항 기본계획) 70개소 →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 40개소

붙임1 마리나항만구역 및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 마리나항만구역

권역	개소	대상항만(교시)	
수도권	경기	3	김포터미널(2011. 1. 3.), 제부(2022. 11. 8.), 안산방아머리(2022. 6. 22.)
	인천	1	왕산(2015. 7. 28.)
전남권	2	목포(2014. 6. 30.), 여수웅천(2022. 6. 13.)	
경남권	2	충무(2014. 6. 30.), 진해명동(2023. 5. 23.)	
경북권	1	후포(2015. 9. 30.)	
제주권	1	중문(2015. 3. 26.)	
합계	10	-	

□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권역	개소	대상항만	
수도권	서울·경기	1	반달섬
	인천	4	영종, 인천, 송도동, 인천터미널
충청권	8	안흥, 원산도, 보령복합, 홍원, 충주호, 단양호, 청풍호, 탑정호	
전북권	4	비응, 고군산, 궁항, 심포	
전남권	8	향화도, 화원, 진도, 완도, 남열, 여수엑스포, 광양, 영암호	
경남권	1	하동	
부울권	6	다대포, 해운대, 당사, 화명, 삼락, 을숙도	
경북권	4	감포, 두호, 강구, 형산강	
강원권	2	한섬, 의암호	
제주권	2	이호, 화순	
합계	40		

붙임2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대상지 변경 현황

권역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70개소)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 (40개소)
수도권	전곡, 덕적도, 서울, 인천, 시화호, 영종, 방아머리, 반달섬, 송도동, 인천터미널	반달섬, 영종, 인천, 송도동, 인천터미널
충청권	홍원, 창리, 왜목, 안흥, 원산도(위치변경), 보령복합, 충주호, 단양호, 청풍호, 탑정호	안흥, 원산도, 보령복합, 홍원, 충주호, 단양호, 청풍호, 탑정호
전북권	고군산, 비응, 궁항, 심포	비응, 고군산, 궁항, 심포
전남권	목포, 소호, 여수엑스포, 웅천, 화원, 진도, 완도, 광양, 남열, 향화도, 영암호	향화도, 화원, 진도, 완도, 남열, 여수엑스포, 광양, 영암호
경남권	충무, 삼천포, 당항포, 지세포, 동환, 하동, 신전항, 근포, 대동	하동
부울권	부산북항, 수영만, 해운대, 동암, 다대포, 당사(울산), 화명, 삼락, 을숙도	다대포, 해운대, 당사, 화명, 삼락, 을숙도
경북권	두호, 양포, 강구, 감포, 나정, 형산강	감포, 두호, 강구, 형산강
강원권	속초, 강릉, 수산, 한섬, 의암호	한섬, 의암호
제주권	강정, 김녕, 도두, 이호, 화순, 신창	이호, 화순